

#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강석주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305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2년 10월 17일

발 의 자 : 강석주, 경기문, 김경훈,  
김규남, 김영철, 김용일,  
김원중, 김원태, 김지향,  
김춘곤, 김태수, 김형재,  
김혜지, 도문열, 박상혁,  
박 석, 박영한, 박환희,  
서상열, 서준오, 송경택,  
신동원, 신복자, 윤영희,  
이봉준, 이상욱, 이숙자,  
이영실, 이용균, 이은림,  
이종태, 이종환, 임만균,  
최민규, 홍국표, 황유정,  
황철규 의원(37명)

## 1. 제안이유

-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를 위한 헌신 중 발생한 후유장애 및 고령화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하여 저소득층 비율이 높으며, 서울시는 이러한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수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.
- 그 외 일반 유공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의 경우 '19년 10만원으로 인상하여 현재 저소득층 대상인 생활보조수당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음.
- 생활보조수당은 2017년 수당개시 이후 급여액이 5년째 동결되었고, 지원액이 일반 보훈대상자와 동일하여 소득개선 효과가 없어 생활보조수당을 20만원으로 인상하여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수당 지급액을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함(안 제7조3항)

### 3. 참고사항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월 10만원”을 “월 20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문서번호

2022101200000020

## 비용추계서

요청인 : 보건복지위원회

담당 : 조도형 과장  
이정수 팀장  
선동규 분석관

접수일 : 2022.10.12.

회신일 : 2022.10.13.

내용문의 : 02-2180-7953

###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#### 목 차

I. 비용추계 요약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 
예산정책담당관  
Seoul Metropolitan Council



4. 덧붙이는 의견 : 없음

5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예산정책담당관

담    당    관      조도형

추계세제팀장      이정수

분석관(주무관)    선동규

☎ 02-2180-7953

e-mail : abasiclilfe@seoul.go.kr

##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### 1. 비용요소

○ 안 제7조(복지 및 생업지원)제3항중 생활보조수당을 ‘월10만원’ 에서 ‘월20만원’

으로 인상하여 지원하는 규정에 따라 증액된 금액에 대한 추가 비용

### 2. 세부추계내역

가. 생활보조수당 증액분 ≙ 27,600,000천원

- 산출방식 =  $\sum_{i=1}^5$ (생활보조수당 지원) $_i$

$i$  = 비용추계 연차(2023년~2027년)

- 연간 생활보조수당 증액분 ≙ 5,520,000천원

= (지원대상자수) × (생활보조수당 인상분) × (12개월)

= 4,600명 × 100천원 × 12개월

= 5,520,000천원

※ 지원대상자수는 2022년 복지정책실 예산서 기준 생활보조수당 지급대상자수 적용 추계